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4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박 정·박해철·신정훈

박용갑・김현정・문금주

송재봉·강유정·송옥주

이용우 · 임오경 · 장경태

권칠승 · 어기구 · 김정호

김주영 • 윤준병 • 이연희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,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고 규정하고 있음.

반면, 그 외의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,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국 회 외곽에 대한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.

그런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,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.

이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

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 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44 조). 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4조의 제목 "(경위와 경찰관)"을 "(경위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국회의 경호를"을 "국회와 그 인근 및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그밖의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"로, "경위(警衛)"를 "경위대(警衛隊)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국회의 경호를"을 "경위대의 업무 수행을"로, "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"를 "정부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의장이 행사한 경호권의 집행
- 2. 의장 및 국회에 방문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 구 대표의 신변(身邊)보호
- 3. 그 밖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
-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, 이 조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.
- ④ 경위대 소속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

- 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.
- ⑤ 경위대 소속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(司法 警察官吏)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의 경우에 7급 이상의 경위대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, 8급 이하의 경위대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리(司 法警察吏)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⑦ 경위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⑧ 경위대의 조직과 제1항의 업무 장소 및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국회 제144조(경위대) ① 국회와 그 인 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 근 및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그 (警衛)를 둔다. 밖의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---------경위대(警衛隊)-----. 1. 의장이 행사한 경호권의 집 <신 설> 행 2. 의장 및 국회에 방문한 외국 <신 설> 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(身邊) 보호 3. 그 밖에 국회의 안전 및 질 <신 설> 서 유지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 ② ------경위대의 업무 수 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 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 부에-----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 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 받아 수행하되, 경위는 회의장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건물 안에서, 경찰공무원은 회 업무를 수행하고, 이 조에 규정 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 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. 무를 수행할 수 없다.

<u><신 설></u>	④ 경위대 소속 공무원 및 제2
	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
	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
	<u>수행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경위대 소속 공무원은 그
	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
	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
	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
	경찰관리(司法警察官吏)의 직무
	를 수행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⑥ 제5항의 경우에 7급 이상의
	경위대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
	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, 8급
	이하의 경위대 소속 공무원은
	사법경찰리(司法警察吏)의 직무
	를 수행한다.
<u><신 설></u>	⑦ 경위대 소속 공무원은 제1
	항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
	한 경우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
	<u>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⑧ 경위대의 조직과 제1항의
	업무 장소 및 직무 범위 등 필
	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
	한다.